

2020/21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법 선언문

1. 선언 주체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영국 현대 노예제 방지법 (Modern Slavery Act 2015) 및 호주 현대노예 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에 의거하여 2020/21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선언문을 최초로 발표합니다. 본 선언문은 당사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사업장과 공급망에 걸쳐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와 관련한 인권 침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실천해온 행동과 향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2. 기업 구조, 사업 및 공급망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향한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발전한 포스코 그룹의 일원입니다. 당사는 철강, 에너지, 식량에서 화학, 자동차, 소재 및 인프라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전통적인 무역상사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사업군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종합 사업회사로 빠르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업과 연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및 전세계 공급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세계 9,33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45개 국가 100여 개에 이르는 법인/지사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현대 노예제의 위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제무역과 B2B 기반의 상품수출입을 주요사업으로 합니다. 또한 미얀마 천연가스 전,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및 우즈베키스탄 면방공장을 포함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발생 위험이 존재하나, 인권침해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해외 제조 시설에 더욱 각별한 주의와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4. 관련 정책 및 노력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권 관련 글로벌 정책, 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여 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현대 노예제 방지 정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노예제 지침을 포함하여 공급사 행동규범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 윤리규범에 인권 보호를 명시한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 UN 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이같은 국제 표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원 인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당사의 인권지침을 해외 자회사, 투자법인 및 협력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제노동기구 (ILO) 주요협약과 국내노동법에 기반한 인사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준수, 충분한 휴가의 보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채용과 보상, 인권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장시간근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우, '19년 근무시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PC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및 생산 시설을 갖춘 해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동노동착취,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해업무 수행, 직원 숙소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사업 활동과 공급망의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며 활기찬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인사규정 및 현지채용인관리지침은 현대 노예제 방지법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인권 기준 및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고자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통한 채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공급망 관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권 침해를 포함하여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 이슈가 당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스코그룹의 공급사 행동규범에 기반하여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며 공급망 상의 역량 개발 및 인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공급사 행동규범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인권보호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급사 행동규범은 유엔 글로벌콤팩트에서 규정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의 기본 규범과 관련하여 총 7개 부문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당사는 영국과 호주의 현대 노예제 방지법 준수를 위해 공급사 행동규범 중 직원의 기본 인권존중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6. 실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대 노예제와 관련된 사업활동 및 공급망 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국가별 노동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본사와 해외사업장에서 인권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권 실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무역법인/지사 및 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실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방문 실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무역법인/지사의 고용현황 및 투자법인의 제조 공정을 대상으로 현대 노예제 규정 위반 위험에 대한 점검 및 보고 활동을 진행합니다.

본사에서 실시하는 연례 윤리 진단에 활용되는 체크리스트에 인권과 관련된 현대 노예제, 인신매매, 아동 노동착취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권 실사는 인권 침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협력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7. 인식제고 및 교육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대 노예제의 위험에 대응하고자 인식 제고와 직원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본사 직원들뿐 만 아니라 해외 직원들에게도 제공될 것입니다. 올해 교육은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2022년에는 임원 전원과 직원들이 심화 온라인 과정을 수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고 외부 네트워크에서 현대 노예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8. 향후 계획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업장과 공급망에 걸쳐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영국 및 호주의 현대 노예제 방지법 등 관련 해외 법규의 준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인권정책 내 명시
- 현대 노예제의 잠재적 위험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에 대한 전사 차원의 의무 교육 시행
- 인권실사 적용 수준을 높이고, 자회사 및 협력사와 면담 프로세스 확대

본 선언문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주 시 보**